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

2011. 10. 25. 선고 2011헌바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사건 : 합헌결정

1.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는 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그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2011헌바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